

가. 서문

신세계센트럴은 협력사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규범은 준법 및 윤리경영, 인권 존중, 환경 보호,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신세계센트럴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들이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ESG 경영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신세계의 CREDO(행동규범)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마련되었습니다. 만일 본 규범의 내용이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과 상충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나. 본문

준법·윤리경영

협력사는 준법·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윤리적인 의사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① 청렴 및 반부패

- 어떠한 형태의 금품, 향응, 특혜도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으며, 뇌물, 횡령, 상납,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모든 거래에서 청렴성을 유지하며,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요구하거나 수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기업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내부 정보 및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유출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보관·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신세계센트럴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③ 품질안전 관리

-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위해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안전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④ 신원보호 및 보복 금지

- 내부고발자 및 문제 제기자의 익명성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법규 위반이 제기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절한 개선 및 시정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⑤ 공정거래 및 공급망 관리

- 각국의 공정거래 및 하도급 법규를 준수하고, 계약서 미발급, 대금 지연지급, 불공정 조건 강요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이나 정보 부정 취득·사용을 해서는 안 되며, 시장 지배적 지위 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권경영

협력사는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정당한 근로환경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만약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협력사는 이를 신속히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① 강제노동 금지

-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 구속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합니다. 신분증, 여권, 비자 등 개인 서류의 보관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② 근로 시간 준수

- 각국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시스템을 통해 총 근로시간(연장 포함)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원치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③ 아동노동 금지

- 법정 최저 고용연령 미만의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신분증·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경우, 유해·위험 업무와 초과·야간근로를 금지하고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④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 사업장을 둔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최저임금, 연장근로 수당 등 법정 기준에 따라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직원들의 경력 개발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⑤ 인도적 대우

- 사생활과 인격권을 존중하며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지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사전 고지와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신체적 강압, 욕설 등과 같이 비인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경영

협력사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① 산업안전 관리

-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예산, 인력, 교육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② 안전보건 교육

-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의식 제고와 관리 능력 향상에 힘써야 합니다.
- 모든 임직원은 비상대응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국가별 법령과 자체 매뉴얼에 따라 즉각 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비상상황 대응

- 화재·자연재해·감염병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중대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임직원 대피 및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경영

협력사는 사업 활동 전반(제품 개발, 제조, 유통, 원자재 조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규를 준수하고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① 법규 준수 및 관련 인허가 취득

-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환경 법규와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에너지 및 오염물질 관리

- 에너지와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오염물질, 폐기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하를 측정·관리하여 최소화해야 합니다.